
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

2022. 7.

기초생활보장과

목 차

I. 기초생활보장 최저보장수준	1
1. 최저보장수준 결정	2
2. 기준중위소득 개요	2
3. '22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	4
[참고1]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	5
II.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	6
1. 개요	7
2. 수급자 선정기준	8
3. 수급자 선정사례	11

1. 기초생활보장 최저보장수준

1

최저보장수준 결정

- 중앙생활보장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장관)에서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결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(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)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(기준 중위소득의 산정) ① 기준 중위소득은 「통계법」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)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.

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.

2

기준중위소득

- 개념

- (중위소득) 전(全)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,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
- (기준중위소득)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
- * (활용)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결정

◆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6조의2(기준 중위소득의 산정) ① 기준 중위소득은 「통계법」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)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.

□ 산정방법

$$n+1\text{년 기준중위소득} = n\text{년 기준중위소득} \times (1+\text{기본증가율}) \times (1+\text{추가증가율})$$

○ (기본증가율)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

* 단 차년도(n+1)나 당년도(n년)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증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

○ (추가증가율) ①기준 중위소득-가금복 간 격차 해소, ②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('21~'26) 한시적으로 추가 적용

* 추가증가율 = (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과의 격차)^{1/6}

- ①국가공식통계원이 가계동향조사 → 가계금융복지조사(이하 가금복)로 바뀜('21)에 따라 중위소득 수준이 대폭 상향

- ②1.2인 가구 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개편

<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 >

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현행	0.370	0.630	0.815	1	1.185	1.370	1.556
조정	0.400	0.650	0.827	1	1.159	1.307	1.447

□ 그간 산정 경과

○ ('21) '20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 1%(급격한 경기변동 감안), 추가증가율 1.66%(원칙반영)로 총 증가율 2.68 % 적용

* 4,749,174원('20기준중위) × 기본증가율(1.0%)× 추가증가율(1.66%) = 4,876,290원

○ ('22) '21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 3.02%(경제의 불확실성 등), 추가증가율 1.94%(원칙반영)로 총 증가율 5.02 % 적용

* 4,876,290원('21기준중위) × 기본증가율(3.02%)× 추가증가율(1.94%) = 5,121,080원

□ '22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

< '22년 기준 중위소득 >

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22년 기준중위소득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0

< '22년 급여별 선정기준 >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교육급여(중위 50%)	972,406	1,630,043	2,097,351	2,560,540	3,012,258	3,453,502
주거급여(중위 46%)	894,614	1,499,639	1,929,562	2,355,697	2,771,277	3,177,222
의료급여(중위 40%)	777,925	1,304,034	1,677,880	2,048,432	2,409,806	2,762,802
생계급여(중위 30%)	583,444	978,026	1,258,410	1,536,324	1,807,355	2,072,101

□ 생계급여

○ (선정기준) 소득인정액이 '기준 중위소득의 30%' 이하인 가구

*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(부동산 등)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

-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 가구

○ (최저보장수준)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

-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

$$\text{생계급여액} = \text{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} (= \text{대상자 선정기준}) - \text{소득인정액}$$

□ 법적근거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

□ 구 성

-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
 - 당연직(6인) : 복지부 장관(위원장) 및 국토부 · 교육부 · 기재부 · 행자부 · 고용부 차관
 - 위촉직(10인) : 전문가(5인), 공익을 대표하는 자(5인)

□ 위원회 기능 및 역할

-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·의결
 -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
 -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
 -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

□ 금년 일정
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소위원회별 급여수준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 (~7월)
- 소위원회의 검토·심의를 기반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차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·최저보장수준 결정(~8.1일)

II.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

1

개요

- (목적)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(수급자 선정)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

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* 이하

* 생계급여 30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6%, 교육급여 50%

② 부양의무자(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
* 생계('21년)·주거('18년)·교육급여('15년)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- (급여의 종류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자활·장제·해산 등 총 7종

- (생계) 중위소득 30%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(보충급여)

- (의료) 질병,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(진찰, 치료 등) 제공

- (주거) 임차료(임차가구), 주택 개량(자가가구) 지원(국토부 소관)

- (교육) 학생 수급자의 입학·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(교육부 소관)

- (해산·장제) 출산시 1인당 70만원,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

- (자활)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

- (절차) 상담·접수(읍면동) → 자산조사·보장결정, 급여 지급(시군구)

- (예산) '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6조 원(국비 기준)

* 생계 5.3조 원, 의료 8.1조 원, 주거 2.1조 원, 교육 0.1조 원, 자활 0.6조 원, 해산장제 348억 원

2

수급자 선정 기준

1. [신청가구]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(소득 + 재산)

◇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함(생계 30%, 의료 40%, 주거 46%, 교육 50%)

□ **소득인정액** :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↳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↳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□ **소득평가액** :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,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

○ (실제소득)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*

* 연금수당 등 “공적이전소득”과 친족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“사적이전소득” 포함

○ (가구특성별 지출비용) 장애아동수당,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

○ (근로소득공제)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

□ **재산의 소득환산액** :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

○ (기본재산액)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

지역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생계·주거·교육급여	6,900만원	4,200만원	3,500만원
의료급여	5,400만원	3,400만원	2,900만원

- (재산범위 특례)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,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

지 역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생계·주거·교육급여	1억원	7,300만원	6,600만원
의료급여	8,500만원	6,500만원	6,000만원

- (재산의 소득환산율)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

구 분 \ 종류별	주거용재산	일반재산	금융재산	자동차
수급(권)자	월 1.04%	월 4.17%	월 6.26%	월 100%

- 일반재산 4.17%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(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)한다고 가정(100% / 24개월)하여 산정
- 현금화 가능성(유동성) 등을 고려,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/4,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.5배 적용
-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(보험료, 유류비 등)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, 월 100% 적용(생업용자동차,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)

- (주거용 재산 한도) 아래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,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

지 역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생계·주거·교육급여	1.2억원	9,000만원	5,200만원
의료급여	1억원	6,800만원	3,800만원

2. 부양의무자 기준

□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('21.10)

- 다만,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 초과 또는 ②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

* 교육급여는 '15년, 주거급여는 '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

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연혁

- ('17~'20) 「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'18~'20)」에 따라 '17년 11월 부터 1~3단계 정상 추진

<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>

- (1단계)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('17.11월)
- (2단계)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18.10월)
- (3단계)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(장애인연금 수급자)이 포함된 경우(생계·의료, '19.1월)
- (4단계)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(기초연금 수급자)이 포함된 경우(생계 '19.1월, 의료 '22.1월)

- ('19) 생계급여는 로드맵 중 일부*를 조기 시행하였으며(당초 '22년 예정), 추가적 제도개선도 실시**('18.7월 「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대책」)

* (4단계)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(기초연금 수급자)가 포함된 경우

** ('19.1월)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(생계·의료급여)

- ('20)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*

* 국가재정전략회의('19.5) 「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」으로 추진

- ('21)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완결

- 노인·한부모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'21.1)
- 생계급여 전 연령층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당초 계획('22년)보다 앞당겨 '21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('21.10~)

- (추진실적)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급여 28.3만, 의료급여 8.8만, 주거급여 72.3만 명의 신규 수급 지원('21.12 기준)

<재산기준 관련>

- (사례 1) 대도시 거주하는 A씨(3인가구)는 주거용 재산 1억 3천만원과 일반 재산 5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매월 장애연금 27만원을 수급 중인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한지?

*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·고재산가가 아님을 가정

☞ 생계급여 3인가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,258,410원인데,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15.6만원으로 **생계급여 102,410원 수급 가능**

- 장애연금은 가구특성별 지출로 소득인정액에 산정 제외
-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1,000만원과 일반 재산 500만원은 소득환산율 월 4.17% 적용 ⇒ 월 62.6만원으로 환산
-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.2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6,900만원 공제한 5,100만원을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.04% 적용
⇒ 월 53만원으로 환산

<부양의무자 기준 관련>

- (사례 2)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(기초연금 수급자)가 포함된 경우로,

- 경기도 OO시에 혼자 거주하는 J씨(59세)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**J씨의 소득, 재산 수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**이나, 부양의무자인 노모(만 86세, 기초연금 수급자)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

☞ '19.1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모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J씨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능하게 되었으며, '22.1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의료급여도 수급 가능